의 안 번 호 1020

【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3. 10. 07.(월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3. 10. 14.(월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3. 10. 16.(수)

2. 제출이유

○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,「같은법 시행령」제7조 및 「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11조에 따라 울산 3.1운동 기념탑 건립 부지 처분(반환)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계획의 총괄

○ 처분대상(양여) 재산

- 토 지 : 2필지 7,096㎡ 155,743천원

나. 처분대상 재산현황

O 토 지

이러	7	대 산	의 표	시	공시지가	츠저그애		처분사유	
일련 번호	소재지	지목	지 적 (m²)	편입면적 (㎡)	6시시기 (천원)	추정금액 (천원)	소유자		
계			7,096	7,096		155,743			
1	서동 635-2	전	650	650	61.1	39,715	울산광역시 중구	사업부지	
2	서동 산 5	얌	6,446	6,446	18.0	116,028	울산광역시 중구	변경	

다. 처분사유

- 서동 산 5번지 일원에 울산 3.1운동 기념탑 건립을 위해 1999년부터 국·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, 진입로 미 개설 및 부지 일부 우정혁신도시 편입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,
- 울산광역시로부터 사업주체 및 건립 부지의 변경(2008. 8. 28) 통보에 따라 기념탑 건립을 위해 국·시비로 매입한 잔여 부지 를 처분(반환)하고자 함.
 - 사업주체 : 우리 구 ⇨ 울산광역시
 - 건립부지 : 서동 산 5번지 일원 ➡ 북구 송정동 355, 송정역사공 워 내

4. 근거 법규

- ○「지방자치법」제39조
- ○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10조
- ○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제7조
- ○「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제11조

5. 참고 사항

- 2013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총괄표 1부
- 취득대상 변경 재산목록 1부

6. 검토의견

□ 관련법령검토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지 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,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에도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.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1건당 취

- 득·처분 기준가격이 10억원이상 일 경우와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이상, 토지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.
-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공유재 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에 제 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, 처분하고 연도중에 변 동이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음.

□ 관리계획 변경 내용 및 사유

- 우리 구 서동 산 5번지 일원에 울산 3.1운동 기념탑 건립을 위해 1999년부터 국·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로 양여 받아 사업 추진하였으나, 진입로 미 개설 및 부지 일부 우정혁신도시 편입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,
- 울산광역시로부터 사업주체 및 건립 부지의 변경(2008. 8. 28) 통보에 따라 기념탑 건립을 위해 국·시비로 매입한 잔여 부지를 처분(반환)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

2013년도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

회계명 : 일반회계 (단위 : ㎡, 천원)

구 분		당초(변경전)			중·감			계(변경후)			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	계	토지	12	9,044.0	1,099,000				12	9,044.0	1,099,000
		건물	4	10,504.21	26,806,000				3	9,204.21	23,306,000
		기타									
		토지	12	9,044.0	1,099,000				12	9,044.0	1,099,000
취	1.매입	건물	4	10,504.21	26,806,000				3	9,204.21	23,306,000
		기타									
	2.교환	토지									
득	으로	건물									
	취득	기타									
	3.기타 취득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	토지	13	11,720.4	3,919,339	2	7,096	155,743	15	18,816.4	4,075,082
	계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	토지	13	11,720.4	3,919,339				13	11,720.4	3,919,339
처	4.매각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5.양여	토지				2	7,096	155,743	2	7,096	155,743
분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6.교환	토지									
	으로	건물									
	취득	기타									

2013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: 일반회계 (단위: ㎡,천원)

일련		재 산 표 시	양여대상	과 표	양 여	양여사유		_,		
번호	지목	소재지	일단의 수 량	수 량	또는 평가액	시기	및 근거법령	양수자	비	고
		_			39,715		사업주체			
1	1 전	서동 635-2	650	650			및			
			6,446	6,446	116,028	201213	건립부지	울산광역		
2 임이		서동 산5				2013년	변경통보	시		
	임야						(2008.8.28			
)			
계	토지		7,096	7,096	155,743					

